

분리배출 표시 대상 지정신청서

※ EPR(www.epr.or.kr)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

접수번호	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	30일
신청인	상 호		전화번호		
	주 소		법인등록번호		
	대표자 성명		사업자등록번호		
지정신청 내 용	대상품목		제품규격		
	제 품 · 포장재 재질(성질 · 상태)		포장재 무게		

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6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 대상으로 지정을 신청합니다.

이
아
지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한국환경공단 귀하

첨부서류	1. 「제품의 포장재질·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」에서 정하는 전문기관의 재질 검사성적(합성수지 재질이나 그 밖의 복합재질로 된 제품·포장재만 해당합니다)에 관한 서류 2. 제품·포장재의 생산·판매량 및 폐기물의 회수체계에 관한 서류 3. 분리배출 표시 도안이 표시된 상표 등에 관한 서류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

처리절차

